

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항현필	850327-*****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보수월액(고지금액)		소득월액(납부금액)	
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
01월	29,640	2,180	0	0
02월	-29,640	-2,180	0	0
03월	0	0	0	0
04월	0	0	0	0
05월	0	0	0	0
06월	62,400	4,600	0	0
07월	62,400	4,600	0	0
08월	62,400	4,600	0	0
09월	62,400	4,600	0	0
10월	62,400	4,600	0	0
11월	62,400	4,600	0	0
12월	62,400	4,600	0	0
연말정산	0	0		
합계	436,800	32,200	0	0
총합계	469,000		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2. 소득월액 보험료 : 보수외소득 7,200만원 초과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며,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항현필	850327-*****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

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0	0
02월	0	0
03월	0	0
04월	0	0
05월	0	0
06월	90,000	0
07월	90,000	0
08월	90,000	0
09월	90,000	0
10월	90,000	0
11월	90,000	0
12월	90,00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험료 납부금액		0
실업크레딧 납부금액		0
합계	630,000	0
총합계		630,000

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 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(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은 12월에 납부 총액 표기)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-2-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총액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황현필	850327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종류	상 호		보험종류				납입금액 계
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
	종피보험자1		종피보험자2		종피보험자3		
보장성	한화생명보험 (주)		얼굴보장보험(갱신형)(무)				152,560
	116-81-11***		176791311		850327-*****	황현필	
보장성	한화생명보험 (주)		한화생명어린이(무)				236,836
	116-81-11***		176919515		170315-*****	황완수	
	850327-*****	황현필					
인별합계금액			389,396				

-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-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보장성 보험,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효진	870628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종류	상 호		보험종류				납입금액 계
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
	종피보험자1		종피보험자2		종피보험자3		
보장성	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		(무) NH다솜플러스종합보험1604				786,558
	104-86-39***		3190042875061		850327-*****	황현필	
보장성	라이나생명보험 (주)		무배당집중보장메디칼보험(갱신)				292,200
	104-81-85***		0139093230011		850327-*****	황현필	
보장성	새마을금고중앙회		우리아이만기II				534,690
	109-82-04***		9601085405944		121104-*****	황연주	
인별합계금액			1,613,448				

- 공제 대상 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- 공제 한도 : 100만원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황현필	850327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1-96-02*	서*****	일반	407,890
1-96-02*	홍*****	일반	15,300
6-90-29*	수****	일반	5,100
1-07-90*	당***	일반	8,700
1-83-01*	당*****	일반	1,100
1-90-63*	더*****	일반	5,100
6-01-25*	도****	일반	3,600
0-82-01*	충*****	일반	61,550
1-90-62*	세*****	일반	9,300
1-09-58*	우***	일반	3,500
0-96-02*	당*****	일반	214,36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735,5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35,500

-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황연주	121104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96-02*	유*****	일반	10,300
2-90-34*	신*****	일반	3,400
1-09-44*	굿*****	일반	6,800
0-96-02*	당*****	일반	60,000
1-32-94*	서***	일반	9,000
1-90-64*	진*****	일반	6,600
5-10-00*	튼***	일반	4,300
0-23-00*	태****	일반	8,400
8-40-00*	드***	일반	3,2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12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12,000

-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효진	870628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1-08-55*	당*****	일반	5,600
1-09-42*	아*****	일반	14,200
6-90-29*	수****	일반	30,100
1-04-63*	바***	일반	8,100
1-09-58*	우***	일반	2,600
0-96-02*	당*****	일반	162,210
0-23-00*	태****	일반	5,000
6-29-00*	터****	일반	3,9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31,71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31,710

-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황혜주	160204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96-02*	유*****	일반	31,800
0-96-02*	당*****	일반	58,000
1-32-94*	서***	일반	38,500
1-90-64*	진*****	일반	41,500
4-04-00*	드***	폐업의료비(비보험제외)	2,100
8-40-00*	드***	일반	4,1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76,0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76,000

-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지출처별)내역 [의료비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황완수	170315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

(단위:원)

사업자번호	상호	종류	지출금액계
0-96-02*	유*****	일반	34,800
1-32-94*	서***	일반	75,200
1-90-64*	진*****	일반	6,600
8-40-00*	드***	일반	2,7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19,3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19,300

-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※ 사내근로복지기금,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,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원금 등으로 지급한 의료비,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'을 받는 경우 해당 의료비,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·성형수술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(보약포함)구입 비용은 세액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음
-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자·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·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등록한 자·난임시술비(한도없음),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
※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항현필	850327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2,468,420	0	0	0	2,468,42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2,468,420
인별합계금액				2,468,420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신용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효진	870628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1,790,309	0	0	0	1,790,309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신용카드	202-81-45***	삼성카드주식회사	일반	1,115,520
신용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671,489
신용카드	101-86-61***	(주) KB국민카드	일반	3,300
인별합계금액				1,790,309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항현필	850327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9,751,208	0	0	0	9,751,208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업자번호	상호	종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	114-82-08***	신용협동조합중앙회	일반	9,751,208
인별합계금액				9,751,208

-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: 기본(사용처별)내역 [직불카드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정효진	870628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4,186,596	0	0	0	4,186,59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사업자번호	상호	종류	공제대상금액합계
직불카드	104-82-07***	농업협동조합중앙회	일반	18,000
직불카드	104-86-39***	농협은행 주식회사	일반	1,068,876
직불카드	202-81-48***	신한카드 주식회사	일반	3,099,720
인별합계금액				4,186,596

-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명	주민등록번호
황현필	850327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1,781,900	0	0	0	1,781,9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공제대상금액
	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71,820	0	269,960	342,220	1,781,900
		273,000	232,570	182,440	150,600	
		158,400	0	0	100,89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
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

2018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18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정효진	870628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일반	전통시장분	대중교통이용분	도서공연비이용분	합계금액
813,200	0	0	0	813,20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(단위:원)

구분	종류	월별 공제대상금액				공제대상금액
	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813,200
		160,440	3,000	210,920	11,000	
		160,440	53,480	106,960	106,96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

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
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일련번호 : 20190122-73873286